

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

제정 2017. 10. 19.

개정 2018. 3. 13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 라 한다) 학칙 제5조의9(인권센터)에 따라 순천대학교 인권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기능·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8. 3. 13.)

제2조(설립목적) 센터는 「대한민국헌법」 및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을 구제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기구로 둔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이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,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
제2장 조직과 업무

제1절 조직

제4조(조직) 센터에 인권상담실,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두며, 약간 명의 행정직원을 둔다.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2절 인권상담실

제6조(인권상담실 조직) ① 상담실에 약간 명의 상담위원 및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상담위원 및 전문상담원은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,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인권상담실의 기능)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학내 구성원이 관련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신고 접수, 상담과 조사
2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조사
3.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
4.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전문상담원의 자격) ① 전문상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사람으로 한다.

- 1.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사람
 - 2. 인권 또는 성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증 소지자
 - 3. 인권 또는 성문제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4. 인권문제 또는 성폭력 예방 및 상담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
- ② 전문상담원은 4대폭력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총장은 전문상담원의 전문교육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

제3절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대책위원회

제9조(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1인이내(교원위원 4명, 조교위원 1명, 직원위원 2명, 학생위원 2명 포함)로 구성되며, 교원위원 중 인권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여성은 2인 이상으로 하며, 직원위원 및 학생위원은 각각 남성 1인, 여성 1인으로 한다. 다만,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(이 경우에는 학생위원은 재적 위원에서 제외한다)
②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며,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,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인권 보호 및 인권의식의 향상, 양성평등 및 성희롱·성매매·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을 위한홍보·교육에 관한 사항
 2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
 3. 인권침해, 차별 여부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여부의 결정·조정·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차별의 예방,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
 5. 홍보·교육에 관한 사항
-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센터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
 2.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1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관련전문가 및 교직원으로 구성되며,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다만,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인권상담실, 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
3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4. 예산과 결산
5.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
6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4장 조사와 구제절차

제13조(상담 및 신고)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에 관하여 상담요청이나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자는 인권상담실이나 위원회에 전화, 편지, 팩스,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은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관련된 사항을 학기 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.
- ③ 상담 및 신고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.
- ④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·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센터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조사개시 및 처리)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.

-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이 접수되고, 인권상담 실의 면담결과 그 사건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, 신속하게 위원회에 조사소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- ② 조사소위원회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여성위원은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.
- ③ 조사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전문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 및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이버공간이나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이 대학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⑤ 조사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.
- ⑥ 이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제16조(조사소위원회 임무) ① 조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
 2.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상담위원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
 3. 그밖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
- ② 조사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원회에 그 경과 및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) ① 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총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18조(허위신고) 위원회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19조(비밀의 준수)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,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조(가중처벌의 요청)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행위를하거나, 유사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21조(신고자 보호) 본인이나 타인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문제를 신고·상담하거나 조정·고충 제기 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5장 보칙

제22조(수당 등 경비) 센터와 인권상담실,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23조(운영세칙) 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7. 10. 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순천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(2018. 3. 13.)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적용례) <생략>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1조(목적) 본문 중 “제12조(부속시설 등 설치)” 를 “제5조의9(인권센터)”로 한다.